

의안번호	
의 퇴 인	서영석 의원
회 답 일	2025. 6. 19.
추계번호	25C3155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8조(대출원금 상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함 1. 첫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30 2. 둘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50 3. 셋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 전액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이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출산지원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등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규정
3	안 제10조(출산지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을 재원으로 출산지원기금을 설치함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4	안 제1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출산지원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대출원금 상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이자 지원)	
3	안 제10조(출산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4	안 제13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낳은지 1년 미만인 사람 중 출산지원대출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해주도록 하고, 정부가 출산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의 자녀수에 따라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며, 저소득층 등에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 제정안 시행 시 기금 설치, 대출원금 상환, 이자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 현 시점에서는 출산지원대출 신청 가능자 중 실제로 대출을 신청할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없고, 안 제5조가 정하고 있는 대출액 상한(1인당 1억 5천만원) 내에서 실제 출산지원대출자가 신청할 대출 금액을 알 수 없음

- 안 제6조는 출산지원대출의 금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 시 결정될 금리를 예상하기 어려움
 - 안 제8조는 자녀 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출신청자들의 자녀 수와 자녀를 낳는 시점을 알 수 없음
 - 안 제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대출자 중 저소득층 등에게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병역의무 수행자 등 외의 대상자와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이자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3조는 출산지원대출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 시행 시 구축될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해당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